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9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호	700
나.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	10,000
나 _의 2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	6,000
나 _의 3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의2	6,000
다.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·설립위원·이사·감사·검사인·청산인,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(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배인(이하	법 제209조 제4항제1호	2,000

이 표에서 "보험회사의 발기인등"이라 한다)		
다의2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·설립위원·이사·감사·검사인·청산인,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(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배인(이하 이 표에서 "보험회사의 발기인등"이라 한다)	법 제209조 제4항제1호	1,200
라. 삭제 <2016. 7. 28.>		
마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호	2,000
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·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호	1,400
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5호	1,400
아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정관·사원명부·의사록·자산목록·대차대조표·사업계획서·사무보고서·결산보고서,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6호	1,400
자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57조제1항(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7호	800
차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8호	2,000

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0조 또는 제 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9호	2,000
타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9조를 위반 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0호	2,000
파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2조 또는 정 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1호	2,000
하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 용하는 「상법」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 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2호	2,000
거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 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 법」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3호	2,000
너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 용하는 「상법」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4호	2,000
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9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619조 또는 제620 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5호	2,000
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6호	1,400
머.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2호	350
버. 법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2호의2	700
서. 법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 을 준 경우	법 제209조 제3항	1,800
어.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 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 한 경우	법 제209조 제2항	6,000
저. 법인인 보험중개사가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3호	700
저의2.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가 법 제9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3호	350

처. 법인인 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4호	400
처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4호	200
커.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2호	10,000
터.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17호	2,000
퍼. 법인인 자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5호	1,000
퍼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5호	500
허.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·제95조의4·제97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18호	1,400
고. 법인인 자가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6호	700
고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6호	350
노. 법인인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·제95조의4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·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5항제7호	700
노의2.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·제95조의4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·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5항제7호	350
도. 법인인 자가 법 제95조의4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8호	700

도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5조의4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8호	350
로.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3호	6,000
모.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19호	1,400
보. 법인인 자가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9호	700
보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9호	350
소. 법인인 자가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0호	700
소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0호	350
오.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. 다만,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1항제4호	6,000
조. 법인인 자가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1호	700
조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1호	350
초. 법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제5항 제11호의2	1,000
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0호	2,000
토.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5호	10,000
포.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6호	10,000
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1호	2,000
구. <삭 제>		
누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2호	2,000
두.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2	3,000

루.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3	10,000
루의2.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4	6,000
무.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2호	700
부.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8호	10,000
수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3호	2,000
우.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9호	10,000
주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4호	2,000
추.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0호	6,000
쿠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5호	1,400
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6호	800
푸. 보험회사가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·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0호의2	10,000
푸의2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7호	2,000
후.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1호	6,000
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8호	1,400

느.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2호	3,000
드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9호	800
르.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·공시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3호	700
므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0호	800
브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1호	1,400
스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2호	1,400
으.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33호	2,000
즈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3호	10,000
츠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34호	2,000
크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·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4항제35호	1,400
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6호	1,400
프.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4호	10,000
흐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7호	2,000
기. 법인인 자가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,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4호	1,000
기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,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	법 제209조 제5항제14호	500

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	
나.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5호	10,000
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8호	2,000
리. 법인인 자가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5호	1,000
리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 및 제19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5호	500
미.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6호	700
미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6호	350
비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9호	1,400
시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0호	1,400
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144조(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1호	2,000
지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·제2항,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2호	2,000
치. 법인인 자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3항제17호	700

치의2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제17호	350
키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3호	1,400
티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44호	1,4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09조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9와 같다.	제10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 ----- <u>제5항</u> 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보험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62